

2023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

합동분과 제1차 회의록

▣ 회의일시 : 2023. 1. 16.(월), 13:00

▣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
▣ 출석위원 : 김영운(위원장), 김삼기(부위원장), 김종대(부위원장),
성애순, 최 헌, 정성숙, 전경욱, 조남규, 성기숙, 신태근,
서도식, 김정희, 임승택, 진명(정혜린), 심연옥, 장남원,
석대권, 배영동, 황경숙, 이순녀

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

1.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됩니다.

제1호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,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)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제2호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)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제3호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제4호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

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.

2.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·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,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.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종 목 지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○ 시·도지사 추천 접수(전년도)	○ 광역지자체 대상 신규 종목 지정 추천 접수
↓	
○ 관계전문가 검토(전년도)	○ 해당 종목 관계전문가 검토 실시 -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신규 종목 지정 타당성 여부 조사결과 검토
↓	
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	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(매년 1월 31일까지)
↓	
○ 조사단 구성	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 ※ 연구용역으로 진행 시 해당 절차 생략
↓	
○ 종목 지정가치 조사 실시	○ 전승가치(역사성, 예술성, 학술성, 대표성 등) 및 전승환경(사회문화적 가치, 지속가능성) 등 조사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	○ 지정가치 조사 결과 검토 - 종목만 지정 시 : 지정 예고 여부 검토 -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 시 : 인정 절차 진행 ※ 보유자(단체) 인정 절차 추진 시 인정검토 완료 후 관보 공고
↓	
○ 종목 지정 예고 관보 공고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여부를 결정
↓	
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심의
↓	
○ 종목 지정 관보 고시	○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고시

국 가 무 형 문 화 재 보 유 자 인 정 업 무 절 차

업무처리 절차	구체적인 실행 내용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 조사 계획 수립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 ○ 문화재청 홈페이지 게시 (매년 1월 31일까지)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자 공모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보유자 인정조사 신청 공모 게시, 신청서 접수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조사단 구성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해당분야 무형문화재 전문위원 및 관련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 ○ 관련 학회 등 추천,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, 제척 여부 확인 후 확정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조사(1단계) 실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서면조사(신청서 및 동영상 자료 포함)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1단계 조사 결과 검토, 2단계 조사대상자 선정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조사(2단계) 실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현장조사(실연) 및 면담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2단계 조사 결과 검토, 3단계 조사대상자 선정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조사(3단계) 실시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심층 기량조사(실연)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3단계 조사 결과 검토, 보유자 인정 예고 검토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 예고 관보 공고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예고(30일) 및 의견 수렴 ※ 예고가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↓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심의</div>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○ 보유자 인정 관보 고시</div>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고시 -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통지 - 인정서 교부, 전승지원금 지급</div>

목 차

【검토사항】

1	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	공개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【보고사항】

1	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	공개
2	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결과 보고	공개

검 토 사 항

1.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조사 계획 검토

가. 제안사항

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2023년에 실시 예정인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추진배경

-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(보유자, 전승교육사) 인정조사 계획 수립 및 공지 예정('23.1월)
 - * 관련근거 :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 및 「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·심의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2) 추진 방침

-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 지정조사
 - 2022년 지정조사 미완료 종목
 - 지정 예비목록 검토 종목(명절 종목_설, 한식, 단오, 동지)
 - * 신규 종목 지정조사 시·도 의견 수렴('22.5~9월) 결과 제출 의견 없음
-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조사
 - 2022년 인정조사 종목 중 미완료 종목
 - 보유자 부재 종목, 보유자 인정조사 10개년 계획 우선 고려
 - * 공예기술 분야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종목 중심 우선 조사
-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인정조사
 - 2022년 인정조사 종목 중 미완료 종목
 - 단체 내 전승여건 및 조사 시기가 오래된 종목, 전승취약종목 우선 추진
- 명예보유자 인정
 -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 추진(조사계획과 별도로 수시 추진)

3) 세부내용

【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지정조사 대상 검토】

구 분	대 상
신규 종목 지정 (5종목)	<u>생전예수재</u> , 명절(설, 한식, 단오, 동지)

* 밑줄은 2022년 조사 진행이 완료된 종목임

** 명절 중 '추석'은 2021년에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대상에서는 제외

【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 검토】

구 분	대 상	
전승자 인정 조사 (18종목)	보유자 (11종목)	(예능 4) <u>대금산조</u> , 경기민요, 대금정악, 동래야류 (기술 7) <u>악기장(현악기)</u> , 갓일(양태), 갓일(입자), 갓일(총모자), 옥장, 망건장, 칠장
	전승교육사 (7종목)	(예능 4) <u>봉산탈춤</u> , 승전무, 이리농악, 수영야류 (기술 1) 소반장 (의식 2) <u>위도띠뱃놀이</u> , 양주소놀이굿

* 밑줄은 2022년 조사 진행이 완료된 종목임

라. 검토할 사항

-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전승자 인정 조사 대상종목 검토

마. 의결사항

- 가결함
 - 지정조사 대상은 생전예수재, 명절(설, 한식, 단오, 동지)로 함
 - 보유자 인정조사 대상은 대금산조, 경기민요, 대금정악, 동래야류, 악기장(현악기), 갓일(양태), 갓일(입자), 갓일(총모자), 옥장, 망건장, 칠장으로 함
 - 전승교육사 인정조사 대상은 봉산탈춤, 승전무, 이리농악, 수영야류, 소반장, 위도띠뱃놀이, 양주소놀이굿으로 함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0명, 가결 20명

바. 특기사항

- 없음

보 고 사 항

1.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 보고

가. 보고사항

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* 관련근거 :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

나. 보고사유

- 2023년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전승교육사 및 보유단체 등에 대한 전승지원금 운영 계획을 보고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1)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지급(매월)

- 지원대상 :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
 - 지급기준
 - 보유자 : 월 1,500,000원
 - 전승교육사 : 월 900,000원 * 전년 대비 1인당 월 15만원(증)
 - 보유단체
 - 보유단체 : 월 3,600,000원
 -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: 월 5,500,000원
- * '자율전승형 보유단체'는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가 있는 경우보다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추가 지원. 단, 법인 미전환 단체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급(보유단체 2,900,000원, 자율전승형 보유단체 월 4,500,000원)

2) 전수장학금(매월)

- 지원대상 : 취약종목 보유자가 추천한 전수장학생
 - 전수장학생 선정 기준 :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추천, 선발 후 5년 지원
- 지급기준 : 월 300,000원 * 전년 대비 1인당 월 2.5만원(증)

3) 전승활동 장려금(연 1회)

- 지원대상 : 연간 전승활동 실적 등이 실적평가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종목의 보유자·전승교육사와 보유단체
 - 전승활동 실적점검 기간 : '23. 1월~'23. 10월 (평가일 : 12월 중)
 - 평가일 및 지급시기 : '23년 12월

- 지급기준 : 종목 특성 및 전승실적에 따라 차등지급, 전년도 평가결과 하위 등급 또는 미지급 대상자가 최상위 등급으로 실적이 올랐을 경우 최상위 등급 장려금의 1.5배 지급(신설)

구분	분야	평가 사항
개인 종목	예능, 놀이, 무예	① 전승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등 * 일반종목과 취약종목을 구별하여 별도 범주 내에서 평가
	기술, 생활관습	
단체 종목	예능	① 전승교육 횟수 ② 대외 전승활동 실적 ③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
	놀이, 무예, 의식, 기술, 생활관습	

- * 코로나 상황 및 운용 여건상 평가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
- * '21년부터 교육권한이 부여된 전승교육사 지급대상 포함

4) 취약종목 추가 지원금(연 1회)

- 지원대상 : 전승취약종목 소속 보유자·전승교육사
 - 전승취약종목 (기준일: '23년 4월 재선정 기준에 따름, 3년 마다 재선정)

(참고) 2020.4월 35종목 선정 사례

- 예능(5종목) : 서도소리, 가곡, 가사, 줄타기, 발탈 (5종목)
- 기술(30종목) : 갯길, 한산모시짜기, 매듭장, 나주의셋골나이, 낙죽장, 조각장, 악기장(북제작, 편종·편경 제작), 궁시장, 채상장, 장도장, 두석장, 백동연죽장, 망건장, 탕건장, 입사장, 자수장, 바디장, 침선장, 전통장, 옹기장, 소반장, 금속활자장, 완초장, 누비장, 화각장, 윤도장, 염장, 금박장, 선자장, 낙화장

- 지원방법
 - 전승취약종목에 소속된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전승활동을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하고 적합성 검토를 거쳐 지원 상한액까지 연 1회 연말 지원
 - (전승활동) 재료구입비용, 전시회·공연 개최비용 및 임차료, 교육시설 개보수비 등
- 지원기준

(단위 : 원)

구분	보유자	전승교육사	이수자
지원 상한액	4,716,000	3,132,000	3,132,000

* 보유자·전승교육사가 부재한 전승취약종목의 경우, 이수자에게 지원

5) 특별지원금

○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

- 명예보유자 특별지원금: 매월 1,000,000원
- 장례위로금 : 명예보유자·보유자(1,200,000원), 전승교육사(600,000원)
- 입원위로금 : 보유자(500,000원), 전승교육사(300,000원)/10일 이상 입원 시, 연 1회

6) 전승지원금 지급 제한

- 법적근거 : 「국가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(고시 제2021-3호), 「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」 (무형원 훈령 제29호)
- 제한대상 :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, 보유단체, 전승교육사, 전수장학생 등

라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0명, 원안 접수 20명

마. 특기사항

- 없음

2.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결과 보고

가. 보고사항

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나. 보고사유

- 2022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(인정)조사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2022년 지정(인정)조사 추진 실적

	위원회 검토·심의 결과	위원회 검토·심의 전 (지정·인정 조사 완료·진행)
종목지정 (4종목)	○지정완료(2) - 한복생활, 율놀이 ○지정부결(1) - 경기시나위	○재검토(1) - 추석
보유자 인정조사 (10종목)	○인정완료(5) - 가곡, 판소리(춘향가), 악기장(북제작), 공시장(공장), 공시장(시장)	○조사진행(3) - 대금산조, 경기민요, 악기장(현악기) ○기타(2) - 나전장(끊음질) *심의 예정 - 나주의 셋골나이
전승교육사 인정조사 (20종목)	○인정완료(7) - 동래야류, 선소리산타령, 금속활자장, 염장, 강릉단오제, 동해안별신굿, 황해도평산소놀이굿 ○인정부결(5) - 강강술래, 남도들노래, 통영오광대, 구례향제줄풍류, 은산별신제	○조사 미 진행(6) - 북청사자놀이, 봉산탈춤, 이리농악, 승전무, 위도띠뱃놀이, 양주소놀이굿 ○기타(2) - 탕건장 *검토 예정 - 낙죽장

- 전승자 인정(총 20명)
 - 보유자 7명 인정(가곡1, 판소리춘향가1, 악기장2, 궁시장3)
 - 전승교육사 13명 인정(동래야류2, 선소리산타령1, 강릉단오제4, 금속활자장1, 황해도평산소놀이굿2, 동해안별신굿2, 염장1)
- 명예보유자 인정(총 18명)
 - 보유자→명예보유자(2명)
 - 전승교육사→명예보유자(16명)

라. 의결사항

- 원안 접수
- 의결정족사항: 출석 20명, 원안 접수 20명

마. 특기사항

- 없음